

# 검 토 보 고 서

2009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1
2010년도 제2회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2

( 2010. 9. 15 )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 전문위원 명 금 길 ]

## 2010년도 제2회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마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2차에 걸쳐 간주 처리된 83건에 80억 2,777만 9천원이 포함된 기정예산액 2,838억 1,922만 6천원 대비 약 6.01%에 해당하는 170억 6,461만 8천원이 증액된 3,008억 8,384만 4천원이 되겠으며,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 중 사용료 수입에 있어 구청사 사용료로 인하여 기정예산액 16억 4,742만 8천원보다 5억 3,522만 6천원이 증액된 21억 8,265만 4천원, 이자수입에 있어 공공예금이자수입의 감소로 인하여 기정예산액 18억원보다 3억원이 감소한 15억원이 감액편성되었고, 순세계잉여금 443억 9,214만 4천원,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에 따른 이월금 44억 1,035만 2천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당초 기정예산액 411억 5,302만 6천원보다 157억 8,991만 7천원이 증액된 569억 4,294만 3천원이 편성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806억 1,119만 5천원보다 10억 3,947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됨에 따라 본추경 예산안의 추경재원은 170억 6,461만 8천원이 되겠으나 보조금 반환금 44억 1,035만 2천원을 제외한 실제 일반회계 세출예산 가용재원은 126억 5,426만 6천원이 되겠으며, 특히 세입재원 중 보조금 반환금 44억 1,035만 2천원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는 세밀히 분석하여 추후 예산 편성 시에는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세입세출 추계를 철저히 계상하므로서 세입이 과다 또는 과소하게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각별히 유념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

○ 2010년도 제2회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11건의 간주처리액 2억 3,177만 9천원이 포함된 기정예산액은 98억 7,945만 2천원으로 총 61억 9,082만 6천원이 증액된 160억 7,027만 8천원이 편성되었음

○ 기획예산과에서는 소송수행을 위한 고문변호사 사무관리비 3,913만원, 소송수행자 활동비 및 포상금 640만원, 예비비로 기정액 27억 5,492만 6천 원보다 47억 2,837만 5천원이 증가한 74억 8,330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지역경제과에서는 마포디자인 개발진흥지구 기반시설 타당성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2억 98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기금전출금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5억원 과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국고보조금 망원유수지 체육공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비 830만 4천원 과 시비보조금으로 전통시장과 관련하여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판매시설 화장실 개선사업비 등 3건에 1억 2,187만 6천원, 사업의 취소로 인한 2008년 연남동글로벌 특화거리조성사업비 4억 5천만원 과 2009년 연남동글로벌 특화거리조성사업비 2억 8,783만원, 와우산배드민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 417만 7천원, 망원유수지체육공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비 558만 7천원 등 총 국시비보조금 8억 7,885만 1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반환되어 증액 편성되었음

○ 재무과에서는 시보조금인 2009년도 국. 시유재산관리 반환금 4,78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2010년도 제2회 기획재정국소관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총 증액분 61억 9,082만 6천원에서 예비비 증액분 47억 2,837만 5천원과 기금전출금 7억을 제외하면 대부분 국. 시비보조금의 집행잔액으로서 반환된 금액이 9억 2,673만 1천원으로 전체 증액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사업의 취소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불용된 금액이 다소 있어 관련 부서에서는 부족한 구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보조금에 대해서는 상급기관과의 긴밀한 정보구축과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이루어 보조금의 정확한 청구 및 집행으로 주어진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시의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예산편성 후 사업의 취소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추경 편성 시 과감히 감액 처리하여 시급하고 필요한 사업의 예산으로 재편성하여 신속적인 조정과 효과적인 집행으로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